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엄혜숙)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제1호)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 근거가 없어진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동법 제25조”로 반영 하였으며,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동법 제45조”로 반영 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제1호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로 개정하였으며,

- 제2조제2항제3호 “항결핵제 보급” 및 제4조제2항과 제4조제2항 제1호~제4호의 결핵사업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는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임.

- 안 제2조제2항제7호 및 안 제3조제3항과 별표 제4호, 별표 제6호에서 현실에 맞도록 측정수수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골밀도 측정은 검사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별표 제3호의 가. B형 간염접종, 나. 장티프스, 다. 신증후군 출혈열 유료접종 수수료와 별표 제4호의 가. 간염검사, 다.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를 시약단가의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으며, 별표 제3호의 라.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관리지침)에 따라 무료로 접종하고 있어 유료접종부분에서 삭제하였으며,

- 안 별표 제4호의 라. 갑상선기능검사, 마. 윈스톱건강검진은 만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 또한, ‘서울시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조례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보건 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6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의 마련 및 각종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별표 제1호)
- 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되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 근거가 없어진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 다.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1) 「지역보건법」
 - 2) 「국민건강보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로,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 진료시”를 “따른 진료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 조례에 의거”를 “그 밖의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액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 제증명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 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파.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하.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 (CD)	3,000원		
2. <삭 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유료접종	가. B형 간염 접종			
	1) 성인	1 ml	4,000원	
	2) 소아	0.5 ml	2,000원	
	나. 장티푸스	0.5 ml	5,000원	
	다. 신증후군출혈열	0.5 ml	9,000원	
	라. <삭 제>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허가용이 아 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 닌 것에 한한다.
	다. 암표지자검사			
	1) AFP	1회	7,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원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 지법」에 따른 장 애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는 수수 료의 50%를 감면 한다.
	바. 골밀도 검사	1회	8,000원	
5. 구강 보 건실 진료 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에 의한 초과 1회 방문 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 시술 상. 하 약 당 1회로 산 정한다.
6.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u>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u>지역보건법</u>」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u>국민건강보험법</u>」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는 「<u>국민건강보험법</u>」 제42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p> <p>1. <u>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u></p> <p>2. <u>삭 제</u></p> <p>3. <u>항결핵제보급</u></p> <p>4. ~ 6. (생략)</p> <p>7. <u>측정 수수료</u></p> <p>8. <u>삭 제</u></p> <p>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u>----- ----- 「<u>지역보건법</u>」 <u>제25조</u>----- -----.</p> <p>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 ----- <u>따른 진료시</u>----- ----- 「<u>국민건강보험법</u>」 <u>제45조</u>----- -----.</p> <p>②-- <u>각 호</u>----- -----.</p> <p>1. <u>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u></p> <p> <u>삭 제</u></p> <p>4. ~ 6. (현행과 같음)</p> <p> <u>삭 제</u></p> <p>③----- ----- <u>그 밖의 조례에 따라</u> --.</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p>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 9. (생 략)

③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우대 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측정 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

④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약을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 제

②항결핵제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

7.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조(세입재활용)

<삭 제>

3. 우수 결핵관리요원의 시상금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결핵사업비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
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허위신청) ----- 따라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수수료액표

수수료액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 증명서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또는 진단서	1통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수첩과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매(CD)	100원		
	파. 1통초과 발급		3,000원		
	하.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2. 항결핵 제보급	○ 초치료 처방			2,000원
에탐부톨+아이나+피라지나미드+리팜피신 6		1인			
에스엠+아이나+리팜피신+파라지나미드 6		1개월분			
에탐부톨+아이나+리팜피신 9		1인			
에스엠+아이나+리팜피		1개월분			
		1인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증명서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원		
	다.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라.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마.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바.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원		
	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1통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사항에' 카항을 더한 수수료액으로 한다.
	아.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자.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차. 결핵진단서	1통	300원		
	카. 기타 사실공부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타.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파. 1통초과 발급	1통	100원		
	하. X-선 의료영상 사본 발급	1매(CD)	3,000원		
	2. (삭제)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다. 신증후군출혈열	0.5ml	한다. 다. 전항에 의한 지정 병의원 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 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단, 매 회 공급총액의 10자리이 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라. 인플루엔자	0.5ml	라. 금액은 위의 가-다항과 동 일함			라. <삭 제>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검사 수수료는 당해 연도 검사시약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 으로 한다. 단,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경우, 1원이상 49원까지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까지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	가. 간염검사 1) A형 간염검사	1회	16,000원	
	2) B.C형 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수가기준(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액)에 준한다.	인 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 한다.		2) B형 간염검사	1회	6,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3) C형 간염검사	1회	3,000원	
	다. 암표지자검사 · AFP	1회	6,000원			나.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 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 한다.
	· CEA	1회	6,000원			다. 암표지자검사			
	· PSA	1회	6,000원			1) AFP	1회	7,000원	
	· CA125	1회	6,000원			2) CEA	1회	7,000원	
						3) PSA	1회	7,000원	
						4) CA125	1회	7,000원	
						라. 갑상선기능검사	1회	15,000원	
						마. 워스톱 건강검진	1회	9,000원	단, 「노인복 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노 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바. 콜밀도 검사	1회	8,0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5구강보건 실 진료 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당해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 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시술 상. 하 약 당1회로 산 정한다.
6.추정 수 수수료	가.체력추정 수수료	1회	3,300원	비의료보험 적 용대상임
	나.골밀도추정 수수료	1회	6,600원	비의료보험 적 용대상임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u>수 수 료 의 50%를 감면 한다</u>
5구강 보 건실 진 료비	불소도포 진료비	1회	해당연도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에 의한 치 과 1회 방문당급여에 의한 수수료	단,시술 상. 하 약 당1회로 산 정한다.
6.<삭제>				